

【 4 】 양주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6. 1.

제 출 자 : 양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빈곤층의 확대,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, 가정기능의 약화 등으로 발생되는 빈곤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'위스타트 마을 조성사업'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"위스타트", "위스타트 마을" 등 사업과 관련한 용어를 정의함 (안 제2조)
- 나. 양주시가 지원하는 위스타트 사업의 범위를 정함 (안 제3조)
- 다. 위스타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(안 제4조)
- 라. 위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주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)
- 마. 위스타트 사업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함 (안 제9조)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스타트 마을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위스타트 마을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
2. 행·재정적 지원방안 및 제도 마련
3. 복지자원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·관 협력방안 강구
4. 위스타트 마을 조성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
5. 위스타트 마을 조성사업 평가
6. 그 밖에 위스타트 마을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

제6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, 당연직 위원은 사회산업국장, 사회복지과장, 보건소장, 위스타트 마을 관할 읍·면·동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아동복지·교육·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사람
 2.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
 3. 위스타트 마을 시민대표 1인
 4.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
- ②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. 다만 전임자의 임기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장) ①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 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
-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·민간단체의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청취, 자료제출,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·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(마을별 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스타트 마을별 운영위원회(이하 “소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소운영위원회의 설치·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운영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
2.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·보존
3.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
4.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1조(수당과 여비)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